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9. 8. 김선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9. 9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11.17)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11.1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2025.11.2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김선교 의원)

현행법은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입장권등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고, 온라인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운동경기 입장권등의 가격은 다양한 할인 적용 수단이 적용되며 실제 구입 가격은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현행법대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경우로 규정하면 부정판매 단속과 제재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실제 온라인 암표행위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에 국한되지 않으며,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보안 조치를 우회하는 등 다양한 온라인상 부정판매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현행법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암표판매의 기준을 ‘입장권등의 판매 정가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등 그 수단과 관계없이 온라인상에서 암표와 관련된 판매금지를 분명히 하며, 입장권등의 부정판매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현행 벌칙을 상향하는 한편,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통하여 얻은 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입장권등의 부정거래를 근절하여 건전한 공연 관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6조의2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 3 –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생략)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과 절차, 구체적인 지급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1. 2. (생략)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생략)

제45조의2(포상금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

-----.

제49조(벌칙) -----

-----.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제49조의2(벌칙) -----

-----.

<삭 제>

2. (현행과 같음)

제51조(몰수·추징) ① (생략)	제51조(몰수·추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47조제1호 및 제48조제1호·제2호에 따른 재물은 몰수한다.	② 제47조제1호, 제48조제1호·제2호 및 제49조제1호-----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경범죄 처벌법」¹⁾에 따르면 현장이 아닌 온라인에서 발생한 압표매매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2024. 3. 26.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었으며, 현행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시행)에 따르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²⁾

- 1)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압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별표]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

근거 법조문	범칙행위	범칙금액
법 제3조제2항제4호 (압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경우	16만원

- 2)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운동경기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 등(이하 “입장권등”이라 한다)의 부정판매(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그 판매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입장권등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한 자

-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판매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판매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하려는 것임.

[개정 내용]

	현행법	개정안
금지 행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 (제6조의2②)	온라인 상에서 방법 무관 입장권등의 부정 판매 (제6조의2②) 기준가 변경: ‘구입가격’→‘판매정가’ (제6조의2①)
벌칙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처벌 강화: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제1호)
기타	-	신고포상금 (제45조의2) 부당이득액 몰수·추징 (제51조②)

○ 개정안은 아래와 같은 측면에서 입법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³⁾.

3)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포상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수수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을 신고·고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고발·검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간행물 부당구입 등 유통질서를 해하는 저자·출판사 대표 등을 신고·고발

- 첫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고 입장권등을 다량 구입하여 온라인 중고사이트 등에서 비싼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람들을 제재할 수 있어 시장질서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기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철도사업법」 등에서도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 셋째, 암표는 사인간 소액 거래가 잦아 신고포상금제도를 통해 신고가 활성화될 경우 행정·수사기관의 사건 인지가 보다 용이해지고 감시체계가 공고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⁴⁾.

4) 참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유사 입법례	포상 대상
「국민체육진흥법」	부정청탁에 따른 금품수수를 한 전문체육선수등을 신고·고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물을 이용한 사행행위를 한 자 등을 신고·고발·검거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간행물 부당구입 등 유통질서를 해하는 저자·출판사 대표 등을 신고·고발

[암표매매 행위 금지 및 처벌 관련 유사 입법례]

법률	금지행위	처벌규정
경범죄 처벌법	경기장 등에서 옷돈을 받고 입장권 등을 타인에게 재 판매 (제3조제2항제4호)	16만원 이하 벌금 (제3조제2항제4호)
철도 사업법	철도사업자가 발행한 승차권 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10조의2)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51조제1항제4호)
평창 올림픽법	조직위원회가 발행한 대회 입장권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넘은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제25조의2)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2조제1항)
공연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구입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4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1조제1호)
체육 시설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용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21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38조제2항제1호의2)
국민체육 진흥법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상습·영업으로 예약가 대비 옷돈을 받고 타인에게 판매 또는 이를 알선 (제6조의2제2항)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제49조의2제1호)

○ 참고로, 매크로 프로그램의 이용 여부와 무관하게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다수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음.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박정하)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기타 사항

없 음.